



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

[시행 2023. 7. 6.] [대통령령 제33617호, 2023. 7. 6., 일부개정]

【제정·개정 이유】 제정·개정문 전체 제정·개정이유

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‘나프타 제조용 원유’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0.5퍼센트에서 0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를 추진함에 따라,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‘나프타’에 대한 0.5퍼센트의 조정관세를 폐지하여 0퍼센트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【제정·개정문】 제정·개정이유 전체 제정·개정문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윤석열 (인)

2023년 7월 6일

국무총리 한덕수

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

● 대통령령 제33617호

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

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중 2710란, 2710.1란, 2710.12란 및 2710.20란을 각각 삭제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